

FSS/2206-10 : 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처리 누락/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 쟁점 분야 : 내재파생상품 분리 및 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 관련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 2014.7.1.~2016.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년 8월부터 X4년 12월까지 복합상품(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하였고, 동 복합상품에는 전환권·신주인수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이 인수자에게 부여되어 있었다.

또한 회사는 투자한 복합상품 중 일부에 대해 해당 상품을 특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회사는 복합상품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아 파생상품자산 및 관련 평가손익 인식을 누락하였고, 제3자에게 부여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아 파생상품부채 및 관련 평가손익을 누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복합상품을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에도, 복합상품 전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하였다.

또한 제3자에게 부여한 회사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관련 공정가치 평가를 누락함으로써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41에 의하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 i)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 사이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 ii)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진 복합계약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당기손익 반영) 대상이 아닌 경우

iii)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독립된 파생상품이 이 기준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39에 의하면,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인식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③ 비상장법인인 A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바, 금융감독원은 A사가 투자한 복합상품의 전환권 등이 ①의 내재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고, 제3자에게 부여한콜옵션은 파생상품부채에 해당하며 상기 ②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보유한 복합상품의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았고, 콜옵션 평가 필요여부도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전환권 등을 회사가 실제 행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전환권 등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는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추가 감사절차를 취하지 않는 등,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않았다.

5. 시사점

회사는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된 복합상품에 투자를 한 경우 내재파생상품이 분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관련 옵션 약정을 한 경우 동 약정이 파생상품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감사인은 회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며,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된 복합상품에 회사가 투자한 경우 내재파생상품이 분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취해야 한다.